

문화관광 인사이트

제 119호

문화·관광 인사이트
제119호
2018. 07. 27
발행처-한국문화관광연구원
www.kcti.re.kr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분류 개정방안

한정임 | 통계·평가센터 통계정보팀 차석전문원*
전진영 | 통계·평가센터 통계정보팀 차석전문원*

1 들어가며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는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비교성 확보를 위한 분류 기준이 되며, 약 90개 법령(인허가, 조세 및 자금 지원, 공공 요금 책정, 사회 보험 적용 기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2017년 1월 제10차 개정·고시 되어 201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10년 만에 이루어진 개정으로 국제분류 변동, 포괄범위 변경, 국내 경제·사회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포함한 산업분류는 산업통계 작성에서 산업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며, 「통계법」¹⁾에도 표준분류의 사용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산업통계 작성 및 연구 시 관련 산업분류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jihan@kcti.re.kr, 02-2669-8954

jjjeon@kcti.re.kr, 02-2669-8956

이 글은 2017년 보조금 사업으로 수행된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 통계개발 및 운영 사업의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사업체 표본을 구축」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1)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2항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라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별도의 산업분류로서 산업특수분류²⁾가 총 4종이 제정되어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사항을 각 산업별 분류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분류 재개정을 총괄하고 있는 통계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산업특수분류 개정을 2018년까지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10차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분류(저작권, 콘텐츠, 관광, 스포츠 산업특수분류)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개정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분류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 주요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는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분류로

2) 산업특수분류는 일반적인 산업영역과 차별화된 특성을 지닌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분류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특정 산업에 해당하는 분류를 재구성하여 해당 산업의 통계작성 및 정책 수요를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1963년 제정된 이래 9차례의 개정을 통해 보완발전되어 왔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은 2007년 제9차 개정 이후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중분류 이하'를 중심으로 개정되었으며 산업분류의 기본 틀인 국제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기준, 적용 원칙, 구조 및 부호체계 등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내용을 분류체계 수준별로 살펴보면, 대분류 수는 현행 유지되었으며, 중분류는 +1개, 소분류는 +4개, 세분류는 +8개, 세세분류는 +51개 순증가 되었다.

표-1 |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10차 분류 항목 수 비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9차	10차	9차	10차	9차	10차	9차	10차
A	3	3	8	8	21	21	34	34
B	4	4	7	7	12	10	17	11
C	24	25	83	85	180	183	461	477
D	2	1	4	3	6	5	9	9
E	3	4	5	6	11	14	15	19
F	2	2	7	8	14	15	42	45
G	3	3	20	20	58	61	164	184
H	4	4	11	11	20	19	46	48
I	2	2	4	4	8	9	24	29
J	6	6	11	11	25	24	42	42
K	3	3	8	8	15	15	33	32
L	2	1	6	2	13	4	21	11
M	4	4	13	14	19	20	50	51
N	2	3	7	11	13	22	21	32
O	1	1	5	5	8	8	25	25
P	1	1	7	7	16	17	29	33
Q	2	2	6	6	9	9	21	25
R	2	2	4	4	17	17	43	43
S	3	3	8	8	18	18	43	41
T	2	2	3	3	3	3	3	3
U	1	1	1	1	1	1	2	2
21	76	77	228	232	487	495	1,145	1,196

제10차 개정은 국내 산업구조 변화 및 특성을 반영하여 미래 성장 산업, 기간산업 및 동력산업 등이 신설 또는 세분화되었으며, 저성장 산업 및 사양산업은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적응 성형기계(3D프린터) 제조업,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튜닝업), 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드론) 제조업, 전기판매업(전기충전소 등),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사업자 등),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은 신설되었다. 대형마트, 면세점은 기존의 '기타 대

형 종합 소매업' 분류에서 세분화되었으며, '나전칠기 가구 제조업'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과 통합이 이루어졌다.

표-2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주요 내용

변경	9차 분류	10차 분류
명칭 변경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대분류)	정보통신업(대분류)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신설	-	디지털 적응 성형기계 제조업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전기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세분화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대형마트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면세점
	한식음식점업	한식 일반 음식점업 한식 면요리 전문점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
	예술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기타 예술학원
통합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현악기 제조업 국악기 제조업	기타 악기 제조업
	기타 악기 제조업 일반 및 해외 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여행사업

3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분류 연계표 개정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저작권, 콘텐츠, 관광, 스포츠 산업특수분류가 있으며, 산업특수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특수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시 이를 반영해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을 연계표 개정이라고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특수분류별 연계표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저작권산업특수분류 연계표 개정

저작권산업특수분류 연계표 개정은 산업의 포괄범 위 변경에 따른 산업의 세분화가 대표적이다.

연극, 오페라 분야의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은 업 무와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 ‘공연 기획업’, ‘임시 및 일 용 인력 공급업’,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 관리 서비스 업’으로 세분화되었다. 특히 연극, 영화 등 단역배우는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으로 분리되었다.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온라인·모바일 게 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모바일 게임 산 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 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이 구분되었다.

표-3 | 저작권산업특수분류 연계표 개정 주요 내용

9차 분류		10차 분류	
코드	분류명	코드	분류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1	공연기획업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7512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 관리 서비스업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 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 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콘텐츠산업특수분류 연계표 개정

콘텐츠산업특수분류 연계표 개정에서의 주요사항으 로 콘텐츠산업이 대부분 포함되는 대분류인 ‘출판, 영 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정보통신업’으로 개 정된 점을 꼽을 수 있다.³⁾

‘광고물 작성업’은 분류명에서 광고물 제작과 혼동을 가져올 수 있어서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으로 분류명이 변경되었다.

달력, 복제사진 및 연하장을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 업분류가 ‘문구용품 소매업’에서 ‘서적 및 잡지류 소매 업’으로 이동하면서 분류명이 각각 ‘문구용품 및 회화 용품 소매업’과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으로 변경 되었다.

3) 국제표준산업분류 등 국제 기구 및 주요 국가의 분류를 참조하여 대분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NACE(유럽), NAICS(북미), JSC(일본) 분류도 ‘정보통신업’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표-4 | 콘텐츠산업특수분류 연계표 개정 주요 내용

9차 분류		10차 분류	
코드	분류명	코드	분류명
71393	광고물 작성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47611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47611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47612	문구용품 소매업		
47612	문구용품 소매업	47612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 관광산업특수분류 연계표 개정

관광산업특수분류 연계표 개정은 세분화되거나 통 합되는 방향이 주를 이룬다.

기존의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은 산업 규모의 확대 로 ‘대형마트’, ‘면세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으로 세 분화되었으며, ‘면세점’이 별도로 분류되어 관광진흥법 상 2016년에 신설된 관광면세업⁴⁾의 규모 산출의 근거 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 규모를 고려하여 ‘정기 항공 운송업’과 ‘부정기 항 공 운송업’이 통합되어 ‘항공 여객운송업’과 ‘항공 화물운 송업’으로 구분되었으며, 관광산업특수분류에는 ‘여객운 송업’만이 포함된다.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과 ‘국내 여행사업’은 관련 시장 에서 국외, 국내, 일반 여행사업을 별도 분류하기 어렵 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여행사업’으로 통합되었고, ‘기 타 캠블링 및 베틀업’은 분류명을 국어표현으로 순화하 여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으로 변경되었다.

표-5 | 관광산업특수분류 연계표 개정 주요 내용

9차 분류		10차 분류	
코드	분류명	코드	분류명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47112	대형 마트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47130	면세점
51100	정기 항공 운송업	51100	항공 여객운송업
51200	부정기 항공 운송업		
55119	기타 관광 숙박 시설 운영업	55104	민박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 시설 운영업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75211	여행사업
75212	국내 여행사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91249	기타 캠블링 및 베틀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관광면세업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 조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 스포츠산업특수분류 연계표 개정

스포츠산업특수분류 연계표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스포츠 교육기관’의 산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입시 전문학원을 제외한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과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예체능 입시 전문학원은 ‘일반 교과 학원’으로 분리되었다.

‘경주장 운영업’은 자동차 경주, 경마, 경륜 등을 위한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동물을 이용한 투우 등 비경주 경기를 위한 경기장도 포함하고 있다. 즉, 포함되는 산업 활동을 고려하여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스포츠산업특수분류 측면에서 해당 명칭이 적합한지는 산업의 정의와 포괄범위를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6 | 스포츠산업특수분류 연계표 개정 주요 내용

9차 분류		10차 분류	
코드	분류명	코드	분류명
85611	스포츠 교육기관	85501	일반 교과 학원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4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분류 개정 및 활용방안

■ 산업분류의 대표성 확보

산업분류의 개정은 크게 분류체계 개정과 한국표준 산업분류 연계표 개정으로 나눌 수 있다. 분류체계 개정은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분류 신설, 삭제, 통합 등으로 전체적인 분류체계를 개정하는 경우, 연계표 개정은 연계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를 뜻한다.

앞서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분류 연계표 개정만을 살펴보았으며, 분류체계 개정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분류 개정을 완료해야 할 것이다.

분류체계 개정 시에는 무엇보다도 관련 기관과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따라서 관련 학계 전문

가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분류를 활용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산업분류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산업의 환경 변화와 함께 함께 활용하고 있는 통계조사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분류체계의 연관성과 조사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분류 이동 및 포괄범위 변경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의 사업체 수 등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분류체계 개정 후의 활용성도 함께 제고해야 할 것이다.

■ 산업분류의 활용성 제고

산업분류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분류를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 스포츠, 관광 산업의 경우 분류체계 설명서를 작성하여 관련 연구 및 사업 등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분류 중에서 3종의 경우만 분류체계 설명서를 작성 및 배포하고 있어, 콘텐츠산업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예술 산업의 경우에도 분류체계 설명서를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분류 개정이 완료되면, 분류체계 설명서 작성을 통해 여러 관련 연구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통계청(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설명회 자료.